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과 사례

정보신청기관 : 국무총리실

I. 들어가며

세계 산업구조의 중심이 경·중공업 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러 지적 재산권은 글로벌 지식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양적인 단순 생산 위주의 경제 산업 구조에서 정보 및 지식에 근거한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를 중시하는 질적 중심 체제로 세계의 산업은 재편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지적 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서도 역시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발족시킨 바 있다.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이러

한 세계 추세에 발맞춰,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률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¹⁾은 특정 상품의 발명가 및 아이디어를 낸 자들이 자신이 만들고 창안한 물건이나 그 외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와 같이 무형의 요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나뉜다. 특히 산업재산권으로 잘 알려진 것으로 특허(Patents)와 상표(Trade mark)를 들 수 있다. 이 권리의 핵심은 특허와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소유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시키고, 반면에 무단으로 이 권리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용자들의



1) 지적재산권 및 지식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으로도 불린다.

행위를 금지시켜 소유권자의 창작의욕 및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여, 기술진보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육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있는 현실에서 구미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산업재산권 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국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한국 산업 및 경제에 필수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유럽은 전통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통합을 모색함과 동시에 선진 산업기술의 개발 및 혁신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산업재산권 분야의 고찰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지역이다. 이런 면에서 유럽의 사례는 한국 지식산업재산권의 미래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유럽의 산업재산권 배경 및 추진 전략

1. 추진 배경

유럽은 세계에서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한 만큼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 역시 19세기부터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1883년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 협약)’이 조인된 이래, 이 협약은 유럽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요 토대가 되었다.²⁾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세계화(Globalization)되며, 후발 국가들의 산업재산권 침해가 주요한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과 함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주도하여, 1995년 WTO 탄생과 함께 TRIPs를 타결시켰다. TRIPs의 주요 내용은 지적재산권의 사용범위 및 기준,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상호협력, 분쟁 발생 시 해결에 관한 규정, 개도국에 대한 유예제도 등을 담고 있는데, WTO 가입국은 의무적으로 비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IPs는 주로 ‘저작권’과 ‘의약품’에 대한 재산권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럽 내에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제적 통합을 완료하고 정치적 통합을 앞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주요 경제블록으로 떠오른 유럽은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2000년 ‘리스본 전략보고서’가 나온 이래 몇 차례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07년 EU 정상회의에서 ‘고용과 일자리 수정 리스본 전략에 대한 전략적 보고서:



2) 1883년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의 주요 내용은 끊임 없이 재개정을 반복하다가 1967년에 스톡홀름 협정을 마지막으로 협약이 확정되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Strategic Report on the Renewed Lisbon Strategy for Growth and Jobs: New Cycle 2008 - 2010)'가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EU 이사회는 “2010년까지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 기반 경제를 이룬다”³⁾는 것을 목표로, 지적 및 산업재산권에 관한 효과적 이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EU 역내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육성과 지식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 다음해인 2008년에는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A strategy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Europe)’의 제안서⁴⁾를 채택하였다. 이 제안서는 장차 유럽 각국의 산업재산권의 정책 및 입법에 영향을 줄 유럽 산업재산권에 관한 가이드 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전모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및 현황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A strategy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Europe)’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권 제도의 질적 개선

특허 및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창작자에게 부여하여 새로운 발명이나 혁신을 장려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데에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지한 바와 같다. 이번 문건은 단순히 창작자의 보호와 경제적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으로 아이디어와 상품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물이다. 비록 유럽이 산업재산권의 오랜 전통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각국마다 상이한 법률과 복잡한 특허 지원 절차는 국내는 물론이고 EU권역 내에서조차 쉽게 특허의 상품화에 장애가 되었고, 일부 악질적인 특허권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까지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제도의 정비와 보완을 통해 유럽 산업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럽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산업재산권에 대한 개선 방향은 크게 두 단계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재산권에 대한 EU와 각국의 협력과 공조를 위한



3) the European Council(2000), “Growth and Jobs: Relaunch of the Lisbon strategy”: <http://www.euractiv.com/en/innovation/growth-jobs-relaunch-lisbon-strategy/article-131891>.

4) the European Commission(2008), A strategy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Europe,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COM 465/3.

권고이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공동체 상표청(the Office for the Harmonisation of the Internal Market: OHIM)' 과 각국의 특허청(National Office)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재산권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재 방치되어 있거나 권리 행사가 용이하지 않는 특허권들이 가진 문제점들의 원인과 구제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에 들어가 궁극적으로 공동체 입법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EU 역내에서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일된 법률 및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⁵⁾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을 표준화하기 위한 문서가 2009년 시행을 목표로 EU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고, 실제로 2009년 12월 4일, EU 이사회는 EU 가입국의 전원 합의로 단일 EU 특허권의 입법과 새로운 특허법원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⁶⁾

(2) 기술 혁신과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대기업이 한국의 대외무역을 주도하는 것과 달리 유럽의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이 그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 경제 산업의 99%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은 유럽 경제의 근간이자 글로벌 지식 기반 경제 체제로의 이행하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 및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될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안서에는 유럽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증대와 함께 혁신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대학 등과 같은 공공 연구 조직(Public Research Organizations : PROs)이 개발한 지식을 자유로이 교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와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렇게 개발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는 특허 비용 감면 및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활용을 보다 쉽게 하며, 중소기업들이 산업재산권 집행에 있어 적극 지원하고 법령이 미비할 경우 개선시키도록 한다. 만약 중소기업들이 특허 소송에 휘말릴 경우 EU의 통합 특허사법권 등의 보호 아래 충분한 해결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전



5) 2004년에 제정된 산업재산권에 대한 '집행 지침(Enforcement Directive)' 은 위조와 해적행위의 방지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smn/smn34/p10_en.htm.

참고로 EU 법률 체제에서 '규정(Regulation)' 은 법안 통과 즉시 정해 놓은 방법과 수단에 의해 강제적인 법적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데에 비해, '지침(Directive)' 은 EU 가입국 스스로가 그 집행의 방법과 수단을 택할 수 있으므로 '규정(Regulation)' 에 비해 약간 느슨하다.

6) the European Commission, "Patents: EU achieves political breakthrough on an enhanced patent system," in the EU Single Market(2009. 12. 4),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IP/09/1880&format=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문가 육성을 위한 IP 프로젝트 (Intellectual Property base Project)를 시행하고, 유럽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후발국가가 합법적이고 원만한 이용을 위해 일종의 협력기관(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lpdesk)을 설치하도록 한다.⁷⁾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제도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과 제도를 마련하여 유럽경제 전반에 혜택을 줄 것으로 유럽 집행위원회는 기대하고 있다.

(3) 국제 사회와의 협력

세계화된 경제구조에서 유럽의 산업재산권이 세계 산업에서 미치는 비중은 크다. 따라서 유럽 위원회는 후발 국가들을 위한 합법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국제 공조체제 구축 및 위반 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체제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공조체제 구축의 한 예로서, EU는 2006년 ‘세계지적재산기구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The WIPO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이하 싱가포르 조약)’을 주도하였다. 이 조약의 목적은 상표법 등록에 대한 행정절차를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국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동시에, 산업재산권

의 영역을 통신 분야의 신기술의 개발에서부터 독창적이고 무형인 상표(이를 테면 소리와 맛에 대한 기준)까지 확대시키는 데에 있다. 특히 후발 국가들의 충분한 기술제공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이 체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노력한다. EU 위원회는 이 조약을 타결하기 위해서 일단 모든 EU 및 EC - 비EU가맹국이지만 노르웨이와 같이 유럽 경제공동체에 속한 국가들이 모두 이 싱가포르 조약에 가입하고 비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⁸⁾ 이와 더불어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기업들이 보다 쉽게 EU 경제권 내에서 얻은 특허권을 비유럽 지역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특허법 통합(Patent law harmonisation)’을 추진한다. 이 구상의 배경은 현재 EU를 포함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개발도상국의 특허 제도가 선진국과 차이가 난다는 데에 있다. ‘환대서양 경제 이사회(Transatlantic Economy Council)’와 EU 집행위원회는 국제 특허법 통합을 위해 EU 국가들과 협의함과 동시에 특허권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후발 국가들과의 합법적인 공조체제는 유지할 것이지만 산업재산권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004년에 ‘3세계에서의 지적재산권



7) 현재 EU의 China IPE SME Helpdesk가 중국에서 무료로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할 것: <http://www.china-iprhelpdesk.eu/>.

8) the European Commission(2008), A strategy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Europe, p.16.

집행 전략(the Strategy for the Enforcement of IPRs in Third Countries)을 수립했고, 같은 목적을 가진 선진국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협력 및 집행을 강조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양자 간의 모든 무역협정에 산업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가 국제적인 의무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EU는 미국 및 일본 등과 함께 강제 집행에 관한 다양한 포럼들⁹⁾을 주요 국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최근 그 성과의 하나로 '유럽 특허청(Europe Patent Office: EPO)'은 '미국 전기전자기술자 표준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Inc., Standards Association: IEEE-SA)'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유럽 측 담당자인 Wim Van der Eijk는 "표준 기관과 특허청 간의 접촉 방식과 정보 교류를 확립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고, 덧붙여 "최초로 이러한 협의를 마련하였으며 더 큰 전략의 부분으로 이용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¹⁰⁾

최근에는 국제 지적 재산권의 프레임 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 위조 무역 협정(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EU가 이러한 외양적인 국제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을 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산업재산권 위반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 능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적 자원의 확충 및 전문 역량 강화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III. 산업재산권 관련 EU와 각국의 개별 사례

산업재산권의 제도적 확립과 국제공조를 위한 EU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내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EU와 외부 세계와의 공조 노력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EU가 경제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와 같이 일사불란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현재 그리스발 금융위기 대처에 가입국들 사이에 첨예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전망이 밝지 않다. 마찬가지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거시적인 당위성 차원에서의 이견은 크지 않지만 세부적인 이견이 항상 존재해 왔고, 일부 세부항목에서는 대립하고 있다. 언어 문제도 EU 역내의 통합된 제도수립과 집행에 여전히 큰 장애물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EU 공동체 공식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에 비해 자국어가 소외당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장은 EU 산업재산권 전략에 대한 EU 각국의 동향, 특히 국내외적으로 주목되는



9) 이를테면 WTO/TRIPS, G8, OECD 및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토의되었다.

10) <http://www.epo.org/topics/news/2009/20090723.html>.

디지털 음원 및 정보의 불법 공유 이슈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스웨덴

스웨덴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산업재산권은 주로 ‘특허 등록청(Patent- och registreringsverket: PRV)’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곳에서 특허, 등록상표, 산업디자인 및 상표를 허가한다. 이 밖에 정기 간행물의 발간과 위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¹¹⁾ 스웨덴의 PRV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대내적으로 민간·공공 기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제 공조를 들 수 있다. PRV는 지적재산권의 인식 향상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도상국가 등에 제공하고 있다.¹²⁾ 약 30여 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은 스웨덴을 유럽 내에서도 ‘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의 제정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A strategy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Europe)’을 2008년에 발표하자, 스웨덴 외교부는 특허 등록청과의 공조를 통해, 2009년 4월,

EU 역내의 단일 특허 제도와 특허 소송 지역으로 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정하고, ‘공동체 특허’를 입법시키기 위해 27개 회원국의 합의를 추진할 것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4공동체 특허’에 반대했던 스페인 등의 국가들의 설득 여부가 앞으로 스웨덴의 정책추진에 있어 과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¹³⁾

한편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스웨덴 특허 등록청의 30년이 넘는 산업재산권 연구와 국제공조 체계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스웨덴의 또 하나의 강점이다. 해외 원조 국가 중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스웨덴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개발도상국들의 지원에도 힘을 써 왔다. ‘국제 개발 협력 협회(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Sida)’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국제 산업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 협력하여 후발 국가들의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에 시작된 PRV의 12기 코스의 교육 과정 중에는 산업재산권 전반에 관한 것뿐 아니라, 각 민간·공공 분야의 산업재산권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협력 과정과 함께 해당 이슈와는 비교적 관련이 적지만 국제 공조 시 반드시 필요한



11) 이영우(2003), “유럽의 지식재산권 산업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No. 2003-12, 67쪽.
12)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International training and development”: <http://www.prv.se/In-English/Education/International-cooperation/>.
13) IDG News Service, “Sweden Aims High for Creation of a Single EU Patent System,” (2009, 7, 2): http://www.pcworld.com/article/167772/sweden_aims_high_for_creation_of_a_single_eu_patent_system.html/.

협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같은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¹⁴⁾

2. 프랑스와 런던협약(London Agreement)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이 비교적 고르게 발달해 왔고, 독일과 함께 EU를 리드하고 있는 국가이다. 프랑스 산업의 우위는, 특히 전통적으로 패션과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진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의 성장이 프랑스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했다. 최근 산업재산권 관련 프랑스의 중소기업의 육성책 중 두드러진 것은 특허제도의 개선이다.

프랑스 지식재산권 국가연구소는 “1000명 이하 종사자 규모 기업의 특허 등록과 관련 주요 과세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¹⁵⁾ 원래 프랑스는 스웨덴 등과 함께 역내 특허권 제도의 확립을 선도하는 국가였으므로, ‘런던 조약(London Agreement)’¹⁶⁾에 가입하여 EU 역내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프랑스는 1999년 수도 파리에서 컨퍼런스를 열어 역내 특허권 제도 수립을 위한 보고서를 제

출하였고, 그 구상 중 일부가 이듬해 2000년 10월에 런던에서 결실을 맺었다. ‘런던 조약’의 가장 큰 목적은 특허 출원 중 발생하는 번역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¹⁷⁾ 그 배경은 EU의 공식 언어 비사용 국가들이 자국의 특허를 EU 공식 언어로 번역해야 할 때 발생하는 비용 문제가 EU 역내의 특허권 관련 제도의 역내 확장에 방해가 되어 왔다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 조약의 의의는, 특허 신청자(기업 포함)가 유럽 특허청(EPO)에 특허 출원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평균 25%를 차지하는 번역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등록 특허의 청구 항목에 대해서만 EU의 공식 언어로 번역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아직 이 조약의 가입국 수가 2010년 현재 15개 국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하다. 현재 가입국은 슬로베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면 비교적 EU 공식 언어 사용 국가이거나 이 언어 사용이 활발한 국가들이다. 런던 조약 비가입 국가들은 특허 청구 항목만 EU 공식 언어로 할 경우 비공식 언어로 제출된 각 특허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공유하기 어



14) 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24 participants from 18 countries on education at PRV”: <http://www.prv.se/In-English/About-us/News/24-participants-from-18-countries-on-education-at-PRV/>.

15) 중소기업연구DB, “프랑스, 1000인 이하 기업에 유리한 특허제도 도입” (2008. 5. 6)

16) 혹은 런던협약(London Protocol)이라고도 한다.

17) 이 조약은 2008년 5월 1일에 그 법안이 각 조인국에서 발효되었고, 가입국은 총 14개 국가 - 독일,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스웨덴 및 스위스 - 이었으나, 2009년 5월 1일 리투아니아가 15번째 국가로 추가로 가입했다.

18) 런던 조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epo.org/topics/issues/london-agreement.html>.

럽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세부사항까지도 번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 1건을 역내 22개 언어로 모두 번역한다면 건당 3만 1천 유로가 소요되므로 EPO는 현실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요구는 당장 실행 불가능하다고 밝혔다.¹⁹⁾ 따라서 통합된 유럽 공동 특허권 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아직 역내 국가들 사이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영국

영국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지식재산권제도가 지속적으로 연구 및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²⁰⁾ 영국도 이미 2001년에 특허, 저작권, 상표 및 의장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자문위원회(UK 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한 이래,²¹⁾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영국의 입법사례로 주목되고 있는 법안이 ‘디지털 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이다.

디지털 경제법안의 요지는 인터넷 서비스 제

공자가 불법 다운로드 등을 통하여 온라인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고 차단할 책임 및 권한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제18조(Article 18)와 그 부칙²²⁾은 1988년에 제정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의 Section 97A에 이은 97B로 추가된다. 즉 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맞춰 기존 법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이 법안은 2010년 3월 16일 영국 상원을 통과했고, 4월 8일 찬성 189와 반대 47로 하원을 통과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사실 디지털 경제 법안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단 콘텐츠 관련 업계는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으며, 국제 음반 산업 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tographic Industry)는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조치라고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제18조에는, 첫머리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특정 온라인 위치의 접속을 차단” 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불법 업·다운로드의 온상지가 되기도 하는 펍(Pub)이나 커피숍, 학교의 도서관과 같이 공공장소에서의 무



19) Internet Business Law Services, “London Agreement Patents Law to be Enacted May 2008” (2008. 5. 12).

20) 이영우(2003), 앞의 책, 67쪽.

21) 위의 책, 67쪽; 위원회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ipil.law.cam.ac.uk/policy_documents/.

22) 제18조와 그 부칙은 다음을 참조: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910/cmbills/089/10089.21-27.html#4111>.

료 wifi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와 IT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유저들의 인터넷 접속권리 자체를 차단하는 삼진아웃 룰(three-strikes rule)도 포함되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논란이 되었다. 189 대 47이라는 숫자는 일견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650석의 총 의원 정원수를 감안하면 의원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²³⁾ 5월에 있을 총선의 결과에 따라 차기 총리 유력 후보 중의 한 명인 닉 크레그(Nick Clegg)는 “우리는 이 법안이 무고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권리마저 빼앗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어 “반드시 폐지되어야”²⁴⁾ 한다고 밝혀, 이 법안은 총선 결과에 의해 그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4. 네덜란드

2009년 8월 27일, 네덜란드의 한 지방법원에서 내려진 네트워크 소송에 대한 판결은 향후 유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P2P(peer-to-peer) 사이트들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Utecht

지방법원은 P2P사이트인 Mininova가 사용하는 BitTorrent 기술 기반의 기능이 유저들로 하여금 저작권을 가진 영화, 음악, 게임 및 TV 쇼 등의 불법 다운로드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Mininova에게 3개월 이내에 그 기능을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500만 유로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²⁵⁾ 결국 Mininova는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여 현재 저작권에 저촉되는 모든 기능을 삭제시켰고, Mininova의 담당자에 따르면 합법적인 자사 사이트는 현재 “콘텐츠의 분배 서비스”만 하고 있다고 한다.²⁶⁾ 이 판결로 인해 불법 다운로드 및 업로드의 주요 매체가 되고 있는 유럽 네트워크 사이트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IV. 나가며

유럽 각국은 경제적 통합 이후 사회 및 정치적 통합을 기치로 삼아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통합의 이면에는 유럽의 번영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의 산업재산권 통합과 외부세계에 대한 집행강화는 유럽 산업의 미래를 위한 당연한 수순일 것



23) Intellectual Property Watch, “UK Passes Internet Access-Limiting Bill For Alleged IP Infringers” (2010. 4. 8).

24) Guardian, “Repeal the digital economy act - Nick Clegg” (2010. 4. 16).

25) InformationWeek, “Dutch Court Rules Against P2P Site In Copyright Case.”(2009. 8. 27).

26) BBC, “Court ruling forces Mininova to end illegal torrents” (2009. 11. 26).

이다. 유럽은 또한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리더로서 이들의 동향은 한국과 같은 무역의존 국가들에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 발표된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A strategy on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Europe)’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유럽은 산업재산권의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다. 유럽은 중소기업이 99% 이상 역내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외부 세계와 경쟁하는 데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은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의 역량강화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역내 산업재산권의 질적 향상과 통합된 제도의 수립을 추진한다. 유럽 기업들이 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상이한 법률과 제도가 무엇보다도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EU 집행위원회는 산업재산권의 역내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규정을 바탕으로, 미국 및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과 국제 공조체제를 수립하려고 한다. 또한 후발 국가들에게도 충분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이들 국가들이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유럽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의 집행 강화이다. 현재 유럽은 대체로 후발 국가들의 산업재산권 위반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축된 국제 네트워크와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유럽의 산업재산권 위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산업재산권의 미래에 대해 큰 그림을 제시했다면, EU 각 회원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산업재산권의 요소가 도입된 것과 스웨덴 특허청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우리도 그 노하우를 도입해 볼 만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EU와 유럽 각국의 사례는 한국 산업재산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여겨진다.

양 건 희

(영국주재 외국법제조사원)